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06

발의연월일: 2021. 2. 8.

발 의 자: 박홍근 · 김경만 · 서영석

안규백 • 양이원영 • 유정주

이동주 • 인재근 • 장경태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경마,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세로서, 시·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 하여 관할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.

그러나 경마,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서 주민교육·주거환경의 악화,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시·도에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,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,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(안 제

29조 및 제29조의2).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"(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"를 "[화력발전·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및 「경륜·경정법」에 따른 장외매장 또는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장외발매소(이하 "장외발매소등"이라 한다)가 있는 시·군이 장외발매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(이하 "승마투표권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 제외한다]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시·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보통세"를 "보통세(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소등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 제외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·제4항 및 제29조의 2제1항·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·징수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시 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 ① --·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 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 는 금액을 관할 시·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. 1. 시・군에서 징수하는 광역 시세·도세(화력발전·원자력 -----[화력발전·원자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 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 세,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 및 「경륜・경정 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 법」에 따른 장외매장 또는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장 외발매소(이하 "장외발매소 등"이라 한다)가 있는 시・군 이 장외발매소등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(이하 "승마투표권등"이라 한 2. (생략) ② • ③ (생 략) <신 설>

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다)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 세는 제외한다]----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 ④ 시・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 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 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시・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특 | 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

-----보통세(장외발매

소등이 있는 자치구가 장외발매 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| 소등에서 발매한 승마투표권등 에 대하여 징수하는 레저세는

제외한다)-----

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 1항에 따른 레저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 징수법 |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

을 장외발매소등이 있는 자치 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